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제2차관으로 개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1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
3. 회부연월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제2차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illegible]

현행	개정안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현행	개정안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	

현행	개정안
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19. (생략)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에 <u>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u>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제26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u>----- -----. 제34조(행정안전부)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 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60%;">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td><td style="width: 40%;">행정안전부장관</td></tr> </table>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60%;">재난안전관리본부</td><td style="width: 40%;">행정안전부</td></tr> </table>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부령으로 본다. 제3조(중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				

현행	개정안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¹⁾으로 차관급에 해당²⁾하며, 이와 유사한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³⁾,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⁴⁾이 있음.

[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본부 조직 규모 현황]

중앙행정기관	본부	본부 내 조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4실 9국 1심의관 39과 3담당관 2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1관 3국 14과 1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보 2실 3국 6관 32과

※자료: 각 부처 직제 및 홈페이지 참고

- 1)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⑧ (생략)
- 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④ (생략)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⑩ (생략)
- 3)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4) 「정부조직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⑤ (생략)

‘본부’ 또는 ‘본부장’라는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 법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과 같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직위를 지칭하고 있음.

먼저, 「정부조직법」은 제2조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국장·과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⁵⁾ 동 규정에 따른 본부조직에는 법무부의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⁶⁾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⁷⁾ 등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서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⁸⁾ 항공교통본부(국토교통부),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¹⁰⁾ 궁능유적본부(국가유산청)¹¹⁾

5)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⑩ (생략)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② (생략)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고용정책실·통합고용정책국·직업능력정책국·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② (생략)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략)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등을 두고 있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별도 조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본부¹²⁾,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특별교통대책본부¹³⁾ 등이 있음.

또한, 경제안보, 자원안보 등의 위기와 대규모 재난에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기대책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데, 이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부장으로서 위기 또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됨.¹⁴⁾¹⁵⁾

1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 (생략)

1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생략)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원 및 공능유적본부를 둔다.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④ (생략)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1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2조(위기대책본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④~⑥ (생략)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 2024.2.6.제정, 2025.2.7. 시행예정)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

개정안은 ‘본부’ 및 ‘본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다양함에 따라 용어만으로 해당 조직의 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재난안전관리본부’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본부장이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명칭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제2차관으로 개편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차관급 본부장 직위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서는 재난안전관리, 과학기술혁신, 통상교섭과 같이 소관하는 특정 업무를 명시하고, 직제에서는 소관 특정 분야의 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 등을 규정¹⁶⁾¹⁷⁾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

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법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⑦ (생략)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법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⑦ (생략)

1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③ (생략)

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⁸⁾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 시 국가재난에 대한 현장대응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2차관이 아닌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의 효율성 및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③ (생략)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생략)

18) 차관의 업무규정 방식은 다음과 같음.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생략)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⑩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실·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문 의 처
02)6788-5339